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05호

2007년 10월 29일 월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50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조점, 지적도근점)고시 2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51호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상가동 제외)고시 9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89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소3-20호선)실시계획(변경) 인가 열람 · 공고 10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89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소1-1호선)실시계획인가 열람 · 공고 14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911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17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915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2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 50호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고시

인천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 예정지적좌표 작성을 위해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지적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59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을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2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개 요

가.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의 명칭 및 번호(이하 좌표와 같음)

나. 좌표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X좌표(m)	Y좌표(m)
별지참조			

다. 소재지와 측량년월일

- 지적삼각보조점 4점 : 인천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 일원, 2007년 6월 13일
- 지적도근점 105점 : 인천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 일원, 2007년 6월 13일

라. 측량성과보관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대한지적공사 인천본부 서구지사

2. 열람안내

- 지적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하는 분은 토지정보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 지】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원점	X 좌표(m)	Y 좌표(m)
보99	지적삼각보조점	계양	-2536.98	-3230.72
		중부	447603.43	171475.13
보100	지적삼각보조점	계양	-3039.29	-2578.26
		중부	447099.38	172126.25
보101	지적삼각보조점	계양	-3645.78	-2948.53
		중부	446493.88	171754.36
보102	지적삼각보조점	계양	-4279.71	-3291.96
		중부	445860.87	171409.24
5415	지적도근점	계양	-3011.84	-4792.74
		중부	447132.65	169911.92
5416	지적도근점	계양	-3044.01	-4703.80
		중부	447100.24	170000.77
5417	지적도근점	계양	-3034.59	-4620.34
		중부	447109.43	170084.26
5418	지적도근점	계양	-3062.40	-4480.25
		중부	447081.26	170224.28
5419	지적도근점	계양	-3085.74	-4313.07
		중부	447057.47	170391.39
5420	지적도근점	계양	-3101.23	-4223.04
		중부	447041.75	170481.37
5421	지적도근점	계양	-3132.65	-4013.55
		중부	447009.79	170690.77
5422	지적도근점	계양	-3230.29	-4018.34
		중부	446912.18	170685.72
5423	지적도근점	계양	-3310.93	-4022.06
		중부	446831.55	170681.79
5424	지적도근점	계양	-3384.47	-4024.92
		중부	446758.01	170678.74
5425	지적도근점	계양	-3621.12	-4023.46
		중부	446521.37	170679.56
5426	지적도근점	계양	-3496.44	-4031.73
		중부	446646.06	170671.63
5427	지적도근점	계양	-4317.40	-3385.87
		중부	445823.43	171315.23
5428	지적도근점	계양	-4260.25	-3314.89
		중부	445880.39	171386.36
5429	지적도근점	계양	-4265.02	-3335.09
		중부	445875.67	171366.14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원점	X 좌표(m)	Y 좌표(m)
5430	지적도근점	계양	-4115.41	-3317.74
		중부	446025.24	171383.89
5431	지적도근점	계양	-3982.35	-3283.96
		중부	446158.21	171418.02
5432	지적도근점	계양	-3915.42	-3259.19
		중부	446225.08	171442.97
5433	지적도근점	계양	-3733.84	-3153.09
		중부	446406.37	171549.56
5434	지적도근점	계양	-3643.85	-3021.43
		중부	446496.01	171681.46
5435	지적도근점	계양	-3617.94	-2982.95
		중부	446521.82	171720.01
5436	지적도근점	계양	-3577.77	-2929.24
		중부	446561.84	171773.82
5437	지적도근점	계양	-3490.72	-2835.79
		중부	446648.65	171867.49
5438	지적도근점	계양	-3435.49	-2774.68
		중부	446703.72	171928.75
5439	지적도근점	계양	-3394.97	-2685.86
		중부	446744.00	172017.68
5440	지적도근점	계양	-3363.13	-2584.99
		중부	446775.57	172118.64
5441	지적도근점	계양	-3347.40	-2508.04
		중부	446791.10	172195.63
5442	지적도근점	계양	-3364.48	-2461.29
		중부	446773.90	172242.33
5443	지적도근점	계양	-3402.81	-2428.15
		중부	446735.48	172275.37
5444	지적도근점	계양	-3375.65	-2415.61
		중부	446762.60	172287.98
5445	지적도근점	계양	-3374.13	-2143.33
		중부	446763.41	172560.23
5446	지적도근점	계양	-3372.15	-2197.04
		중부	446765.53	172506.53
5447	지적도근점	계양	-3366.84	-2330.97
		중부	446771.19	172372.63
5448	지적도근점	계양	-3331.79	-2375.26
		중부	446806.35	172328.45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원점	X 좌표(m)	Y 좌표(m)
5449	지적도근점	계양	-3324.43	-2301.69
		중부	446813.52	172402.05
5450	지적도근점	계양	-3267.63	-2291.49
		중부	446870.30	172412.40
5451	지적도근점	계양	-3255.94	-2416.07
		중부	446882.32	172287.87
5452	지적도근점	계양	-3230.77	-2418.13
		중부	446907.49	172285.87
5453	지적도근점	계양	-3224.47	-2514.37
		중부	446914.04	172189.65
5454	지적도근점	계양	-3221.32	-2604.41
		중부	446917.43	172099.62
5455	지적도근점	계양	-3165.12	-2593.07
		중부	446973.60	172111.11
5456	지적도근점	계양	-3074.55	-2568.61
		중부	447064.10	172135.81
5457	지적도근점	계양	-3038.73	-2651.76
		중부	447100.14	172052.75
5458	지적도근점	계양	-3068.26	-2751.89
		중부	447070.86	171952.54
5459	지적도근점	계양	-3079.07	-2817.91
		중부	447060.22	171886.49
5460	지적도근점	계양	-3103.04	-2855.42
		중부	447036.35	171848.92
5461	지적도근점	계양	-3114.88	-2948.01
		중부	447024.76	171756.30
5462	지적도근점	계양	-3058.35	-2943.16
		중부	447081.28	171761.31
5463	지적도근점	계양	-3053.46	-3021.08
		중부	447086.38	171683.41
5464	지적도근점	계양	-3047.93	-3100.33
		중부	447092.12	171604.18
5465	지적도근점	계양	-2933.92	-3104.25
		중부	447206.15	171600.56
5466	지적도근점	계양	-2883.38	-3111.62
		중부	447256.71	171593.33
5467	지적도근점	계양	-2841.41	-3072.89
		중부	447298.58	171632.17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원점	X 좌표(m)	Y 좌표(m)
5468	지적도근점	계양	-2738.20	-3083.78
		중부	447401.82	171621.55
5469	지적도근점	계양	-2628.55	-3095.81
		중부	447511.51	171609.81
5470	지적도근점	계양	-2627.22	-3124.89
		중부	447512.92	171580.73
5471	지적도근점	계양	-2709.51	-3118.83
		중부	447430.62	171586.58
5472	지적도근점	계양	-2708.78	-3196.39
		중부	447431.55	171509.03
5473	지적도근점	계양	-2704.14	-3257.65
		중부	447436.35	171447.78
5474	지적도근점	계양	-2712.09	-3287.93
		중부	447428.47	171417.48
5475	지적도근점	계양	-2697.71	-3335.69
		중부	447442.98	171369.76
5476	지적도근점	계양	-2644.28	-3342.14
		중부	447496.43	171363.45
5477	지적도근점	계양	-2639.78	-3265.48
		중부	447500.73	171440.11
5478	지적도근점	계양	-2598.28	-3270.75
		중부	447542.24	171434.95
5479	지적도근점	계양	-2547.62	-3271.90
		중부	447592.90	171433.93
5480	지적도근점	계양	-2522.69	-3284.53
		중부	447617.86	171421.36
5481	지적도근점	계양	-2547.34	-3338.72
		중부	447593.35	171367.12
5482	지적도근점	계양	-2598.98	-3414.28
		중부	449541.90	171291.43
5483	지적도근점	계양	-2643.15	-3641.32
		중부	447497.85	171244.28
5484	지적도근점	계양	-2720.39	-3483.55
		중부	447420.66	171221.85
5485	지적도근점	계양	-2799.64	-3499.87
		중부	447341.46	171205.32
5486	지적도근점	계양	-2895.11	-3555.02
		중부	447246.13	171149.93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원점	X 좌표(m)	Y 좌표(m)
5487	지적도근점	계양	-2928.34	-3563.30
		중부	447212.92	171141.56
5488	지적도근점	계양	-2986.60	-3607.91
		중부	447154.77	171096.80
5489	지적도근점	계양	-2976.25	-3651.90
		중부	447165.23	171052.84
5490	지적도근점	계양	-2982.94	-3711.27
		중부	447158.70	170993.45
5491	지적도근점	계양	-2983.86	-3771.81
		중부	447157.94	170932.90
5492	지적도근점	계양	-3004.64	-3846.37
		중부	447137.36	170858.29
5493	지적도근점	계양	-3003.59	-3947.08
		중부	447138.68	170757.58
5494	지적도근점	계양	-3027.49	-4009.46
		중부	-447114.95	170695.14
5495	지적도근점	계양	-3250.07	-3323.01
		중부	446890.55	171380.97
5496	지적도근점	계양	-3115.59	-3359.03
		중부	447025.13	171345.30
5497	지적도근점	계양	-3132.12	-3245.25
		중부	447008.31	171459.03
5498	지적도근점	계양	-3042.22	-3238.98
		중부	447098.20	171465.54
5499	지적도근점	계양	-3155.82	-3921.86
		중부	446986.38	170782.39
5500	지적도근점	계양	-3164.59	-3817.46
		중부	446977.33	170886.77
5501	지적도근점	계양	-3170.82	-3650.44
		중부	446970.65	171053.76
5502	지적도근점	계양	-3234.21	-3651.11
		중부	446907.28	171052.92
5503	지적도근점	계양	-3239.28	-3552.64
		중부	446901.95	171151.38
5504	지적도근점	계양	-3242.70	-3481.63
		중부	446898.34	171222.38
5505	지적도근점	계양	-3420.14	-3333.75
		중부	446720.52	171369.78

일련번호	명 칭	좌 표		
		원점	X 좌표(m)	Y 좌표(m)
5506	지적도근점	계양	-3388.29	-3953.79
		중부	446754.00	170749.85
5507	지적도근점	계양	-3395.31	-3830.34
		중부	446746.65	170873.28
5508	지적도근점	계양	-3403.59	-3663.17
		중부	446737.92	171040.43
5509	지적도근점	계양	-3542.32	-3666.04
		중부	446599.23	171037.19
5510	지적도근점	계양	-3546.96	3602.13
		중부	446594.42	171101.09
5511	지적도근점	계양	-3550.85	-3496.03
		중부	446590.25	171207.17
5512	지적도근점	계양	-3555.79	-3397.00
		중부	446585.05	171306.17
5513	지적도근점	계양	-3558.85	-3339.68
		중부	446581.83	171363.48
5514	지적도근점	계양	-3693.58	-3337.42
		중부	446447.09	171365.38
5515	지적도근점	계양	-3757.28	-3348.65
		중부	446383.42	171353.97
5516	지적도근점	계양	-3824.93	-3343.83
		중부	446315.76	171358.61
5517	지적도근점	계양	-3960.25	-3359.20
		중부	446180.48	171342.87
5518	지적도근점	계양	-4111.56	-3366.05
		중부	446029.20	171335.61
5519	지적도근점	계양	-4261.99	-3367.47
		중부	445878.79	171333.79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 51호

주택재건축사업 준공인가(상가동 제외)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준공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25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좌동 가좌주공1단지 재건축아파트 건립공사
- 2. 정비사업의 시행구역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7, 11번지
- 3. 사업시행자 : 가좌주공1단지아파트재건축조합 조합장 이봉원(가좌동 30-25, 39) 한신공영 (주) 대표이사 태기전(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15-1)
- 4. 준공인가의 내역(상가동 제외)
 - 가. 대지면적 : 87,063.0㎡
 - 나. 연 면 적 : 331,680.89㎡(상가제외)
 - 다.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 라.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마. 세 대 수 : 2,276세대
 - 바. 층 수 : 지하2층 / 지상 18-25층 / 35개동

※ 준공인가신청서상 사업시행자 【한신공영(주)대표이사, 가좌주공재건축조합】 동의확인서 제출사항 :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은 법정하자 기간 내에서 입주자가 관리하며, 교통영향평가에 의거 사업시행자 소유부지 내 설치된 공공도로상 후퇴구간에 대해서는 준공인가 후 별도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설물관리청이나 관리청이 위임·허가한 기관에서 시설물유지관리나 신규시설물 설치도 가능함.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89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20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소로3류20호선, 사업명:고현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 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6) 및 건설과(560-452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변경사유 : 사업기간 연장 및 토지분할로 인한 편입용지 변경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275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도로(소로3류20호선)
 - 【명칭】 고현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L = 293m, B = 8m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07. 8월 ~ 2008. 2. 20 【변경】 2007. 8월 ~ 2008. 12. 2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 : 붙임과 같음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변경) : 붙임과 같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과 같음
10.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용 지 조 서(변경)

구분	번호	동 명	지 번	지목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내용	
당초	1	공촌동	산142-2	임	292	59	부평구 부평동 400-21	김옥진				
변경	1	공촌동	산142-7	임	71	71	부평구 부평동 400-21	김옥진				
당초	2	공촌동	산142	임	1,450	353	부평구 부평동 400-21	김옥진				
변경	2	공촌동	산142-5	임	409	409	부평구 부평동 400-21	김옥진				
당초	3	공촌동	219	전	1,486	17	동구 송림동 8-500	문인환				
변경	3	공촌동	219-4	전	17	17	동구 송림동 8-500	문인환				
당초	4	공촌동	283	전	1,243	141	서구 공촌동 250	이용민				
변경	4	공촌동	283-2	전	137	137	서구 공촌동 250	이용민				
당초	5	공촌동	283-1	전	2,341	239	서구 공촌동 250	이용민				
변경	5	공촌동	283-3	전	236	236	서구 공촌동 250	이용민				
당초	6	공촌동	산141-3	임	3,328	450	산림청	국				
변경	6	공촌동	산141-7	임	468	468	산림청	국				
변경	7	공촌동	산141-8	임	2	2	산림청	국				
당초	7	공촌동	282	전	1,499	79	서구 공촌동 250	이철주				
변경	8	공촌동	282-2	전	50	50	서구 공촌동 250	이철주				
변경	9	공촌동	282-3	전	27	27	서구 공촌동 250	이철주				
당초	8	공촌동	278	전	560	399	서구 연희동 11	정용구				
변경	10	공촌동	278-6	전	390	390	서구 연희동 11	정용구				
당초	9	공촌동	278-1	전	701	318	재무부	국				
변경	11	공촌동	278-7	전	343	343	재무부	국				
당초	10	공촌동	산141-6	임	402	27	산림청	국				
변경	12	공촌동	산141-9	임	27	27	산림청	국				
당초	11	공촌동	산140-4	임	472	35	인천광역시 서구					
변경	13	공촌동	산140-7	임	27	27	인천광역시 서구					
당초	12	공촌동	275-1	전	2,645	418	서구 공촌동 307-36	이용진				
변경	14	공촌동	275-7	전	418	418	서구 공촌동 307-36	이용진				
당초	13	공촌동	277-1	전	7	7	인천광역시(교육감)	국				
변경	15	공촌동	277-1	전	7	7	인천광역시(교육감)	국				
당초	14	공촌동	275	답	3,833	115	서구 신현동 254 주공a 25동 203호	김영욱 외1				
변경	16	공촌동	275-6	답	117	117	서구 신현동 254 주공a 25동 203호	김영욱 외1				

지장물조사(변경없음)

번호	동명	지번	지장물		소유자		관계인			비고
			종류	수량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관리내용	
1	공촌동	283-1	배나무	109	서구 공촌동 250	이용민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89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1-1호선)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소로1류1호선, 사업명:승학길 도로정비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6) 및 건설과(560-452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213-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도로(소로1류1호선)
 - 【명칭】 승학길 도로정비공사
3. 사업의 규모 : L = 80m, B = 12m ~ 13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7. 9월 ~ 2008.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불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불임과 같음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 9.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용 지 조 서

번호	토 지 소 재			현실적 이용상황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동 명	지 번	지 목		공 부	편 입	잔 여	성 명	주 소	
①	연희동	114-7	도	현행도로	1	1	0	인 천 시		
②	연희동	213-2	도	현행도로	235	㉠ 175	㉡ 60	국 (건설교통부)		
③	연희동	213-3	답	현행도로	2	2	0	인 천 시		
④	연희동	213-5	전	현행도로및 비닐하우스 (화원)	978	㉠ 70	㉡ 908	인 희 형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22BL1LT와10필지 검단아이파크@103동302호	근저당 및 지상권재(서인천농 업협동조합:서곶지 점,율도지점)
⑤	연희동	213-9	도	현행도로	33	33	0	인 천 시		
⑥	연희동	213-11	도	공지	130	㉠ 96	㉡ 34	인 천 시		
⑦	연희동	213-12	도	현행도로	144	㉠ 118	㉡ 26	인 천 시		
⑧	연희동	213-18	도	현행도로	83	83	0	인 천 시		
⑨	연희동	215-2	도	현행도로	278	278	0	국(건설부)		
⑩	연희동	215-9	도	현행도로및 공지	160	160	0	정 흥 구	인천 서구 연희동 235	
⑪	연희동	215-16	도	현행도로및 공지	125	125	0	인 천 시		
⑫	연희동	556-2	도	현행도로	1,511	㉠ 73	㉡ 1,438	국 (건설교통부)		
계					3,680	1,214	2,466			

지 장 물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총면적 (㎡)	편입면적 (㎡)	실제 이용 현황	토지 소유자		물건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 내용	
①	연희동 215-9	회양목	H = 0.5m		약58류음	묘목발	인천 서구 연희동235 번지	정흥구	인천 서구 연희동235 번지	정흥구		
②	연희동 215-2	전 주			1본	도로						
③	연희동 556-2	전 주			1본	도로						
④	연희동 749	전 주			1본	도로						
⑤	연희동 215-2	체신전주			1본	도로						
계					약58류음 전주3본 체신주1본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9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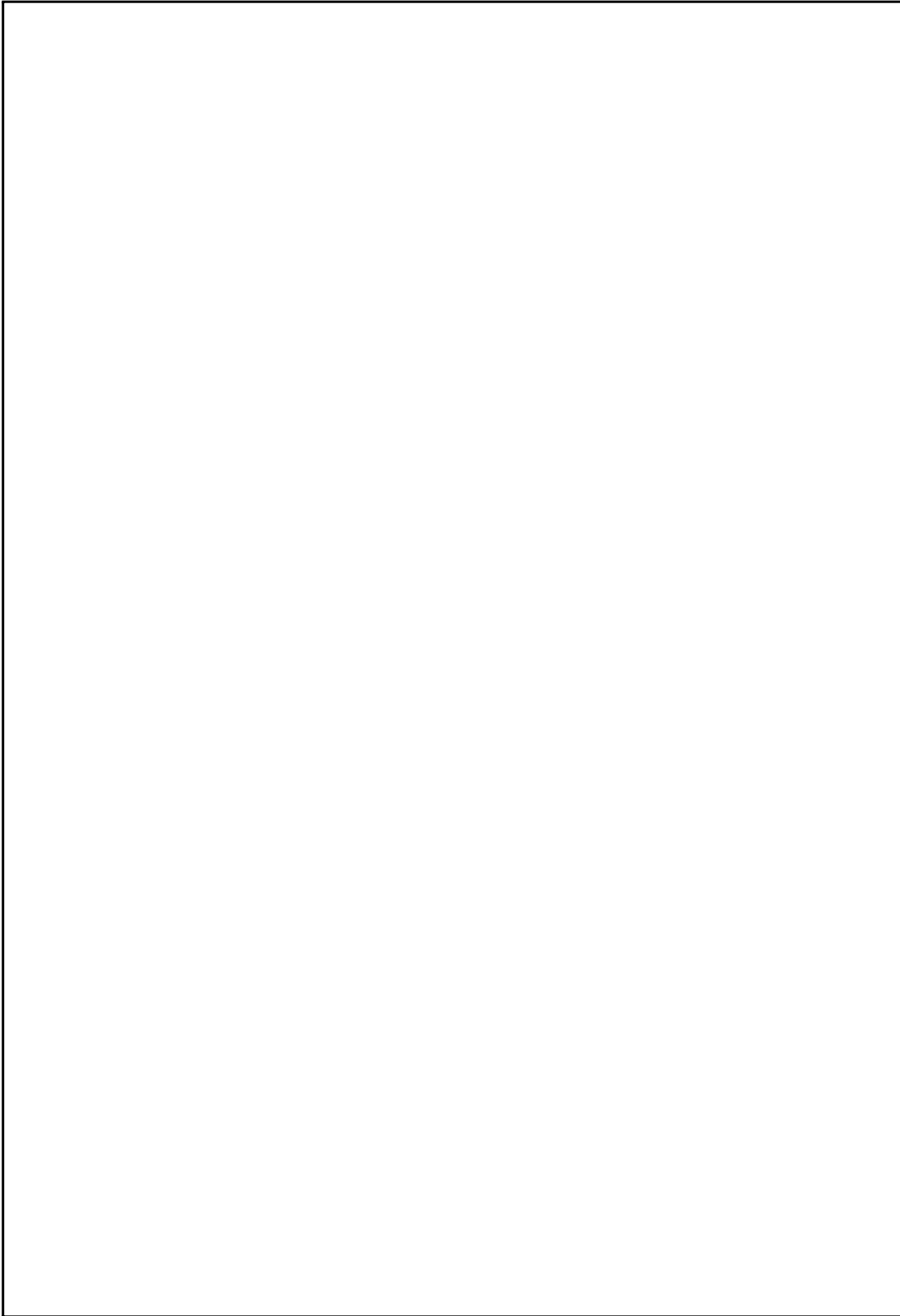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주소불명, 이사감, 장기간 방치,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등 우편교부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07년 10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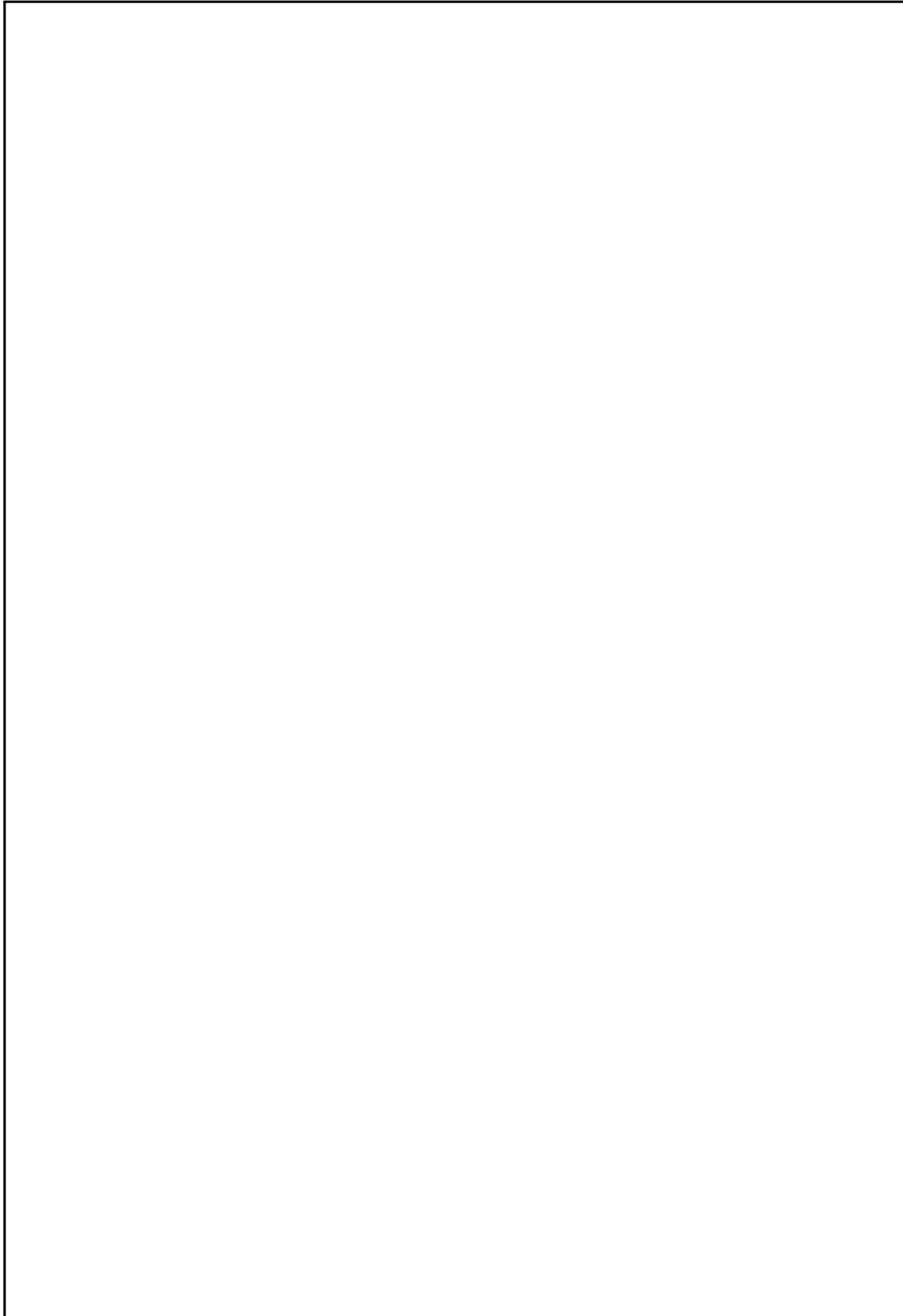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1. 제 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압류예고통지
- 2. 관련법규 :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나. 국세징수법 제41조
- 3. 공시송달기간 : 2007. 10. 25 ~ 2007. 11. 8(15일간)
- 4. 공시송달내역 : 12명(붙임 참조)
- 5.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 의무보험담당(☎032-560-4876, FAX 032-560-4869, 담당 김현경)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915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2008년도에 시행될 지방세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을 목적으로 일부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함으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함
-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07.4.11)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
- 농협중앙회 등 감면을 「지방세법」에서 「감면조례」로 이관
-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여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20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7조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을 “각호에서 정하는” 으로,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 제1항 제1호중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를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2조제1항” 을 “ 제47조 제1항” 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임대사업자가” 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을 “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사업자가” 를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을 “제1호·제2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으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으로 한다.

제17조 중 “부동산 ” 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2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 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 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 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p>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 조와 00특별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 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생 략) 3. (생 략) <p>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 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6조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 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 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 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 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 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 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 가격이 3억원이하일 것 <p>제7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각호에서 정하는-----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 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p>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p>② ----- 제47조 제1항----- ----- -----</p>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u>부동산</u>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p>제17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_____ _____ _____ _____ <u>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u>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